

보도자료

2011년 7월 18일(월) 배포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네트워크정책국 네트워크기획보호과 허성욱 과장(☎750-2710)
 네트워크기획보호과 최광기 사무관(☎750-2718) ggchoi@kcc.go.kr

와이파이(Wi-Fi), 공공장소 중심으로 공동구축 및 활용 추진

방송통신위원회(위원장 최시중)와 통신사업자들은 공항, 철도, 종합 버스터미널, 관공서 민원실 등 공공장소에서 와이파이(Wi-Fi)를 공동 구축·활용하기로 합의(7.11)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1,000여개 와이파이 Zone에 대하여 3사가 공동구축할 계획이다.

이는 최근 와이파이 구축이 확산되고 있으나 사업자간 중복구축 논란 및 전파혼신, 통신설비의 비효율적 운용 등의 문제가 부상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재로 지난 4월부터 통신3사간 협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게 되었다. 합의서에 따르면 우선 신규 구축되는 공공장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며 현장 실사를 토대로 약 1,000여개 Zone에 와이파이 공동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.

이번 통신사업자간 합의는 와이파이 설비에 대한 통신사간 다른 사업 전략과 사유재산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전파자원의 효율적 활용, 이용자 편의 확대 등 공익적 목적에서 일단 진전이 있는 결과라고 판단된다.

향후 이번 합의된 지역 외에도 사업자 간 자율적인 와이파이 공동 구축·활용에 대한 논의를 계속 진행하고, 방송통신위원회도 통신사 간 적극적인 협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중개역할을 수행하는 등 와이파이 공동구축·활용의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다.

붙임 : 통신3사 간 Wi-Fi 공동구축·활용에 관한 합의서 1부. 끝.

[붙임]

통신3사 간 Wi-Fi 공동구축·활용에 관한 합의서

1. KT, SK텔레콤, LG유플러스(이하 '통신3사'라 한다)는 국민의 무선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및 전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Wi-Fi 공동구축·활용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.
2. 통신3사 간 공동구축·활용의 범위는 관공서 민원실, 공항, 철도, 종합 버스터미널에서 신규 Wi-Fi Zone을 구축하는 것으로 정한다.
3. Wi-Fi Zone 공동구축과 관련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63조(전기통신 설비의 공동구축)에 따라 통신3사 간 구축비용 분담 등 협의를 통하여 공동구축을 추진한다.
4. Wi-Fi Zone 공동구축 예정 장소에 통신3사 중 전기통신설비가 구축되지 않은 사업자가 있을 경우, 전기통신설비가 있는 사업자의 땅을 공동활용한다. 이 때 전기통신설비가 있는 사업자가 제시한 대가산정 안을 토대로 사업자 간 협상을 실시한다.
5. 2호에서 정한 범위 외에 Wi-Fi 공동구축·활용 장소의 확대에 대하여는 통신3사 간의 협의에 의한다.